

광명시 어린이·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

제정 2023. 9. 25 조례 제300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명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·청소년의 교통 복지 지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동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”란 9세 이상 12세 이하, “청소년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주민을 말한다.
2. “시내버스 등”이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 및 별표1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말한다.
3. “대중교통비 지원”이란 제2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린이,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교통카드”란 어린이, 청소년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카드 사업자가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어린이, 청소년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,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 및 범위) ① 대중교통비 지원은 광명시(이하 “시”라고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,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도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, 지원대상과 시기를 달리하여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어린이·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지원 대상 및 시기

- 2. 지원 금액 및 방법
- 3. 신청 및 지원 절차
- 4.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지원체계 구축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, 「은행법」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지원중단)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어린이·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대중교통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.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
- 2. 제4조의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
- 3.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
- 4.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
- 5.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